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08년 4월 11일

제 안 자 : 이성희 위원회 1인

1. 개정이유

마포문화재단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함은 물론 재단업무를 통합하고 있는 상임이사의 직함으로는 동 재단의 대표성이 떨어져 공연유치등 대외적인 섭외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사료되어 상임이사를 대표로 변경하여 대외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상임이사의 대외적인 명칭을 대표로 변경(안 제7조)
-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함(안 제8조)
-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 및 이사로 구성(안 제9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22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사항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2. 신구조문 대비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중 “상임이사”를 “상임이사(이하 “대표”라 한다)”로, 동조제3항과 동조제4항 및 동조제5항중 “상임이사”를 “대표”로 한다

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“상임이사”를 “대표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중 “이사장과 이사”를 “이사장과 대표 및 이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임원) ①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(생략) ③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, <u>상임이사는 이사회</u> 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. ④상임이사 이외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당연직 이사는 구의 행정관리국장과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, 선임직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. ⑤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	제7조(임원) ①—— <u>상임이사(이하 "대표" 라 한다)</u> —— ②(현행과 같음) ③—————, 대표는————— ④대표————— ⑤대표를————— ——.
제8조(임원의 직무)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여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<u>상임이사가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업무를 통괄한다. ③(생략)	제8조(임원의 직무) ①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대표가—————. ②대표는————— ——. ③(현행과 같음)
제9조(이사회) ①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<u>이사장과 이사로</u> 구성한다. ② - ④(생략)	제9조(이사회) ①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,————— 이사장과 대표 및 이사로—————. ② - ④(현행과 같음)